

『도시계획시설(묘지공원)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』 의 건 서(안)

1. 처리기관 : 구미시장

2. 관 련 법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

나.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제11조 2항

3. 의견내용

청원인들이 신청한 구미시 옥계동 510번지 일대 묘지공원(350,000m²)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건은,

1978. 9. 15일 결정 고시 되었으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6조 규정의 “경과 조치”에 의하여, 2000. 7.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경우로서, 기산일은 2000. 7. 1일이므로, 묘지공원은 2020년에 실효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

현재 구미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, 청원인들의 민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시지역 전체 면적이 묘지공원의 필요성과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,

본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,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제11조 2항에 의거 구미시장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한다.

다 음

- 장기적으로 미조성 된 청원인들의 도시계획시설(묘지공원)에 대하여, 현재 추진중인 구미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, 주변 환경변화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분석하여,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,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.

2012. 12.

구미시의회 의원 일동